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 펀드명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 [주식]

□ 펀드명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수 증권자투자신탁(UH) [주식]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자본시장법 및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행령 개정에	업무)	업무)	
따른 변경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	
	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	
	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	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	적정성 여부,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u>	
	행한다.	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	
		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u>여부</u>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	
		다.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시행령 개정에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따른 변경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 <u>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산 <u>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	
	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	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아니하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21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제21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시행령 개정에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따른 변경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 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 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제23조(판매가격)

-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 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 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 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5영 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생 략)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 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 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 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 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 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

제23조(판매가격)

-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4명 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 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 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5영업 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③(현행과 같음)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 구시 **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
-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 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 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 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8영 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

대금을 지급한다.

③ ~ ④(생 략)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제26조(환매연기)

- ① ~ ④(생 략)
-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 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 이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이전)과 그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생 략)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제29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을 지급한다.
- ③ ~ ④(현행과 같음)

제26조(환매연기)

- ① ~ ④(현행과 같음)
-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이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경우 8영업일 이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경우
- 2. (현행과 같음)

제29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지본시장범 및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 만류 변경 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자대조표 2. ~ 3. (생 략) ②(생 략) 자본시장범 및 시행령 개정에 마른 변경 전 한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자대조표 2. ~ 3. (생 략) ②(생 략) 지38조(보수) 지48조(보수) 지48조(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③(생 략) 지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보경) 다른 변경 지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보경) 지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수 의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의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의자총회 결의일로부터 <u>75영업일</u> 지수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②~②(从 些)	① ~ ②(첨채코 가·O.)
지행령 개정에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 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자대조표 2.~3. (생 략) (2)(생 략) (2)(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지행령 개정에 (1)(생 략) (2)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때 3개월간으로 하며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때 3개월간으로 하며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때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3)(생 략) (생 학) (1) (4) (현행과 같음) (5)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다음 각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기하여 집합투자업자 수 기하여 집합투자업 구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기하여 집합투자업 가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수 기하여 집합투자업 가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기하여 집합투자업 가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수 기하여 집합투자업 가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기의	기片기기에 미	② ~ ③(생 략) - 게21조(토기시타이 최게가시)	② ~ ③(현행과 같음) 제21조(토기사타이 최제가시)
 마른 변경 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다. 1. 대차대조표 2.~3. (생 략) ②(행과 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지행령 개정에 (1)(생 략) (2)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때 3개월간으로 하며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때 3개월간으로 하며보수계산기간 중투자신탁보수를때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인 출한다. ③(생 략)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마른 변경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마른 변경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수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자대조표 2. ~ 3. (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자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③(생 략)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① ~ ④ (생 략) ①(현행과 같음) 지세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 3. (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③(생 략)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①(생 략) 지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지부상대표상에 무자업자의 보충입자의 기상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③(생 략) 지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지부상대표상에 마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따든 변경		
지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지행령 개정에 (①(생 략)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보수계산기간 중투자신탁보수를매일 대자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루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변경) 마른 변경 ① ~ ④ (생 략) (⑤제4항에 따른손실등의 보상은다음 각호에 의하여집합투자업자가수 자의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2. ~ 3. (생 략)			
자본시장법 및 시38조(보수) 제38조(보수) 시행령 개정에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따른 변경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보수계산기간 중투자신탁보수를 보수계산기간 중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한다.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 출한다. 기생령 개정에 변경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마른 변경 ① ~ ④ (생략) 기사항명 개정에 따른 선실 등의 보상은다음 각호에 의하여집합투자업자가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자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지행령 개정에 대론 변경 (고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3)(생략) (전형)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본) (한형) 표근 변경 (기 ~ ④ (생략) (5)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가 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가의 지시에 따라 신탁 보다 된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때른 변경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략)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략)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기하여 집합투자업자 기하여 집합투자업자 기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기기에 대한다는 기기에	자본시장법 및	제38조(보수)	제38조(보수)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략)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성하고 단계 기정에 따라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	시행령 개정에	①(생 략)	①(현행과 같음)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략) 기소의 변경) 변경) 기소의 (생략) 기소의 보상은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가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무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현행과 같음)	따른 변경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략)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
매일 <u>대차대조표</u>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등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무의 지시에 따라신탁업자가수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다음 가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행령 개정에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략)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매일 <u>대차대조표</u> 상에 계상하고 다	매일 <u>재무상태표</u> 상에 계상하고 다
지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략)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한다. ③(생략) 출한다.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행령 개정에 변경)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시행령 개정에 변경)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 략)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출한다.	출한다.
지행령 개정에 변경) 변경) 따른 변경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따른 변경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본시장법 및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시행령 개정에	변경)	변경)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따른 변경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
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u>제5영업일</u> 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u>5영업일</u>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
		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u>제5영업일</u>	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u>5영업일</u>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
다. 다.		다.	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자본시장법 및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시행령 개정에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	시행령 개정에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
따른 변경 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따른 변경	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1. ~ 2. (생 략)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 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② ~ ⑤(생 략)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 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 7. (생략)
 - 8.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 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 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 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 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 ⑤(현행과 같음)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 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 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 7. (현행과 같음)
- 8.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 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 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
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	<u>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 <u>(법 시</u>
9.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	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
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실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
	다는 사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u>부 칙</u>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